

#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및 방향성

## [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가이드]

# 목 차

1. 추진 배경
2. 주요 경과
3. 민간활용사례
4. 시책 주요내용(1)
5. 시책 주요내용(2)
6. 시책 발표 이후 추진현황
7.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/해설서 주요내용

# 1. 추진 배경

##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: 정부3.0

공공정보의 적극적인 **개방**과 **공유**,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



2012. 10. 18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 
(출처 : 뉴스핌)



## 2. 주요 경과(1) – 공공데이터법 제정

###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('13.7.30)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공공기관”
2. “공공데이터”란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원칙)**

-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7조(제공대상의 범위)**

## 2. 주요 경과(2) –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

### 공공저작물 개방확대 제도 기반 마련 및 공공누리 오픈('12.2)

「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이하 '공공누리')」공고 (2012-29호)

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 '공공누리(www.kogil.or.kr)' 오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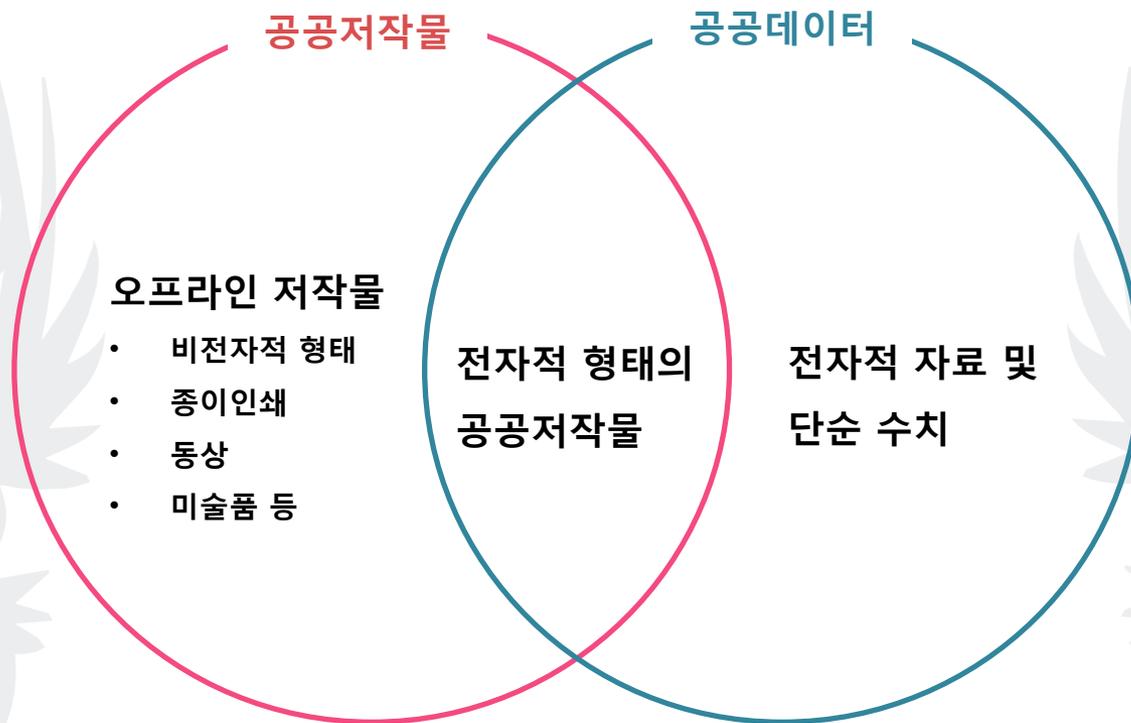
### 「저작권법」 제24조의2(공공저작물 자유이용) 시행('14.7.1)

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.

###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및 공공저작권 관리지침 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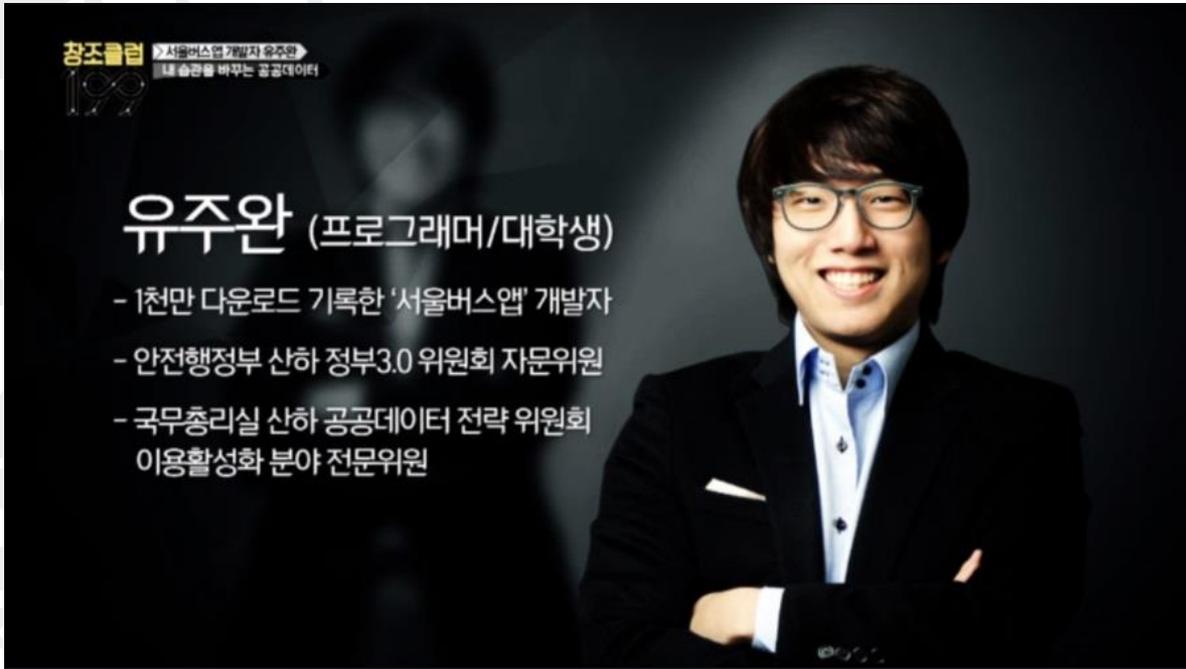
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('15.9, 사회관계장관회의)  
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/해설서 (공공저작권 관리지침 개정)

# [참고]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차이



※ '15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분쟁조정 건수의 약 59%가 저작물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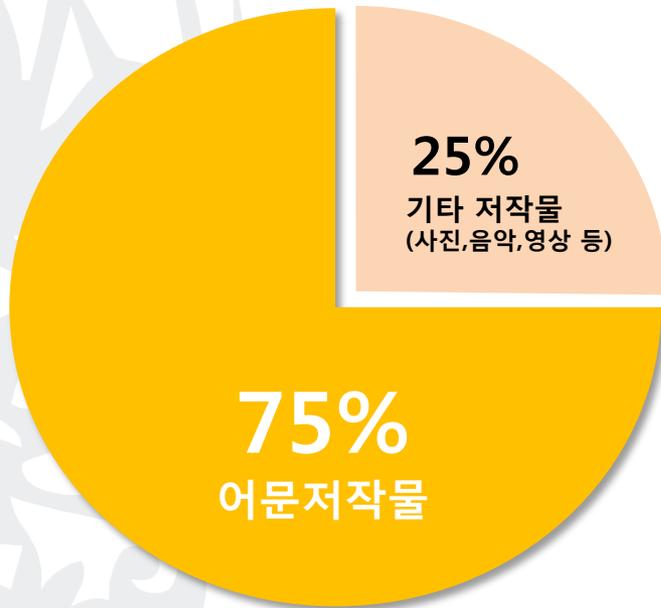
### 3. 민간활용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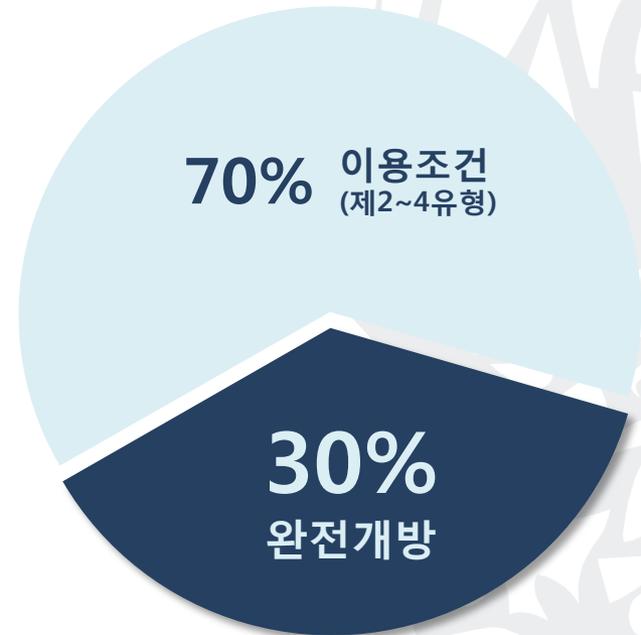
-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기반으로,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앱 개발 실현
- 공공데이터 활용의 선순환 (2014. 3. 5. 창조클럽 199 강연 중)

## 4. 시책 주요내용(1) - 개선 필요 사항

### 1. 활용가치 높은 공공저작물의 양적·질적 부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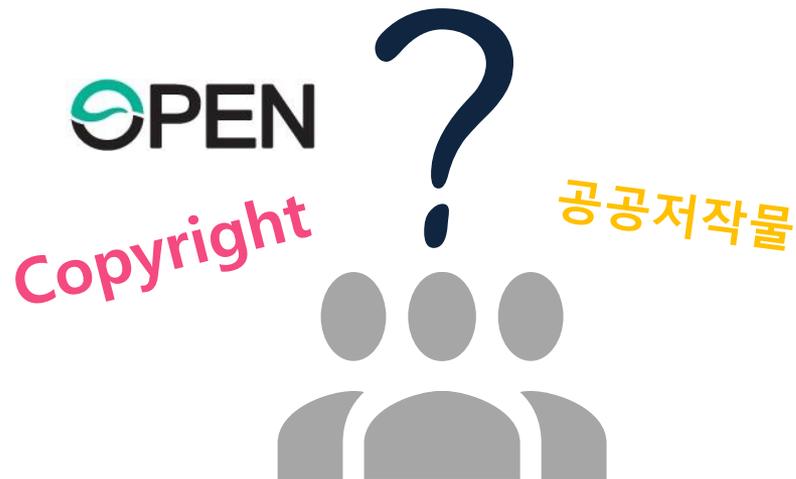
어문저작물- 공공저작물 전체의 75%



공공누리 제1유형- 전체의 30%

## 4. 시책 주요내용(1) - 개선 필요 사항

### 2. 공공저작물 개방을 고려한 업무처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



#### 실무담당자 인식부족

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나, 실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권리확보가 미흡한 사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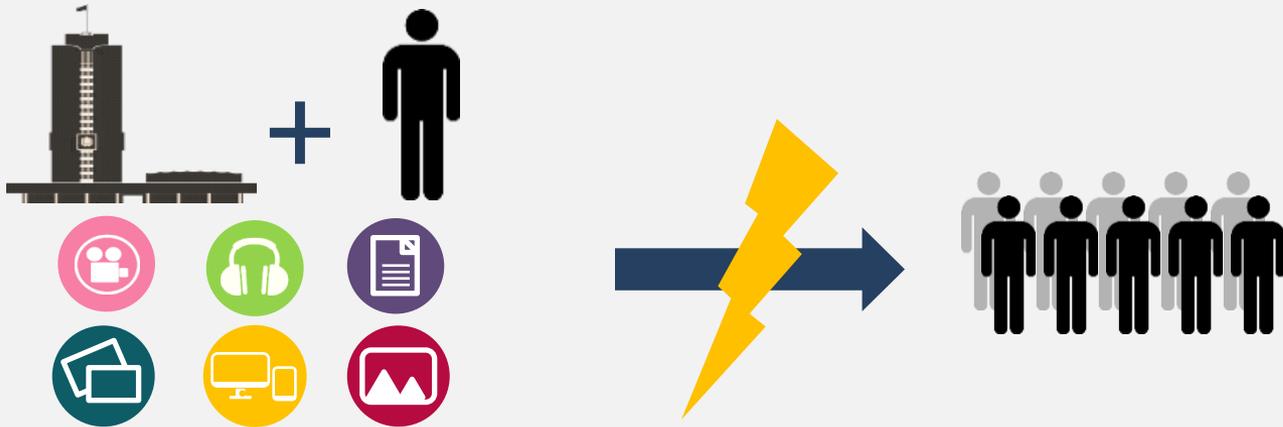


#### 총괄담당자 부재

총괄담당자 부재로 저작권 관리업무에 대한 회피 대두

## 4. 시책 주요내용(1) - 개선 필요 사항

### 3. 공공누리의 일관된 적용 및 저작권 분쟁 우려 최소화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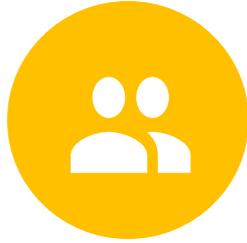
- ✓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 하고자 하여도, 공공기관의 저작재산권 보유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
- ✓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, 저작권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개방과 이용에 소극적

## 5. 시책 주요내용(2) - 추진 과제

### 1.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



민간 기증  
저작물 관리



저작권 구매



저작권 귀속  
가이드라인



공공저작물  
품질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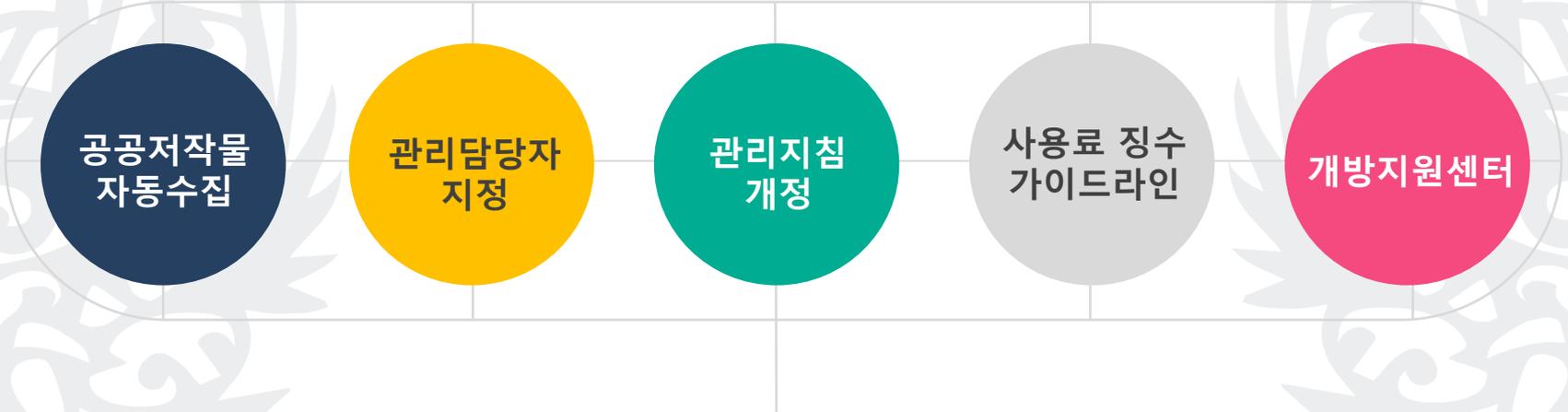
공공기관  
범위확대



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**공공저작물 1,000만 건 확보**

## 5. 시책 주요내용 (2) - 추진 과제

### 1.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



공공저작물 개방·관리 과정에서 **기관 부담을 최소화**

# 5. 시책 주요내용(2) - 추진 과제

## 2. 유통 및 이용 활성화

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 
안전한 공공저작물



공공누리 적용 확산  
저작물 출처표시 가이드라인 제시  
면책을 통한 민간 이용 활성화

### 이용활성화 관련 기업 컨설팅

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

기관과 국민의 인식 제고를  
통한 저변 확대

교육 및 홍보 강화

- ✓ 지원대상 기관 방문 교육 및 컨설팅
- ✓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
- ✓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

## 5. 시책 주요내용(2) - 추진 과제

### 3. 관련제도 정비

신탁관리제도

공공기관 경영평가  
(정부3.0) 평가지표

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

용역계약 일반조건의  
합리적 해석

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**합리적 제도 개선**

## 6. 시책 발표 이후 추진 현황

-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설명회(15.9.24)
-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지정 요청(각 기관)
-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전부개정
-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(11월)
- 공공기관 담당자 워크숍(12월)



공공부문이 개방한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국민비즈니스 기회 창출  
(2017년 1천만 건 개방 목표)

#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지침 해설서

##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

-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반영
- 공공저작물 수집·생산부터 관리 및 개방까지 **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구체화**
-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'**공공누리**' 적용기준의 구체적 반영
- 공공저작물 이용 시 출처표시방법 등 **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**

##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해설서

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, **지침상의 각 조항 별 해설을 통해**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**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안내**

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 제2조 : 적용범위

###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

-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 기준 316개 기관
-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준용 가능하도록 함

## 제3조 : 개념정의

**공공저작물** :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(자유이용대상) 또는 일부(시책을 통해 추진)를 가진 저작물

**자유이용** : 이용하려는 자가 개별적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

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 제4조 : 기본원칙
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또는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원칙

- 공공데이터법 제3조 및 저작권법 제36조에 근거

## 제5조 및 제6조 : 저작권 귀속 및 권리처리

공공기관 등의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

- (업무 기획/종사자/법인 명의의 공표 등)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

(용역 위탁)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한 경우

-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확보
- 이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취지로 양도계약 체결 필요

#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# 제7조 : 담당자

기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(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겸임 가능)

책임관 및 담당자의 주요업무 설명

### 제9조 : 공공저작물 개방

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(공공누리 부착 필요)

홈페이지상의 저작권정책 게시를 통한 공공저작물 이용방법 안내

#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# 제10조 : 공공저작물 출판 및 발행

정부간행물의 출판 및 발행은 현행과 동일하게 가능 (실비수준의 비용 청구 가능)

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은 출판사 등 제3자에 독점적 권리 인정 계약 불가

### 제11조 : 공공누리 적용

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제1유형

예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타 유형 부칙이 필요한 경우 : 저작권 등록 후 부칙 (제2유형~제4유형)

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공공누리 부칙에 동의를 받은 경우 : 동의 조건에 따른 유형 부칙

#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# 제12조~제13조 : 제공비용, 사용료

자유이용대상인 경우 무료 제공이 원칙 (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실비 청구 가능)

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: 신탁 또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

### 제17조 :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

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을 통한 개방 권고 등 시행

## 7.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 및 해설서 주요내용

### 제19조~제22조 : 공공저작물 이용

공공누리 이용약관 준수

출처의 명시

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 훼손에 이르는 변경 금지 등

### 기타

체크리스트, 공공누리 적용 동의서, 양도계약서, 홈페이지 저작권정책, 공공저작물 Q&A

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

# After workshop

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재산권 권리 관계 확인



공공누리 적용 여부 및 저작권 정책 확인



공공누리 적용 후 공공저작물 개방

##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

